

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2022년 03월 29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3년 02월 22일	이사회 승인	개정
2023년 12월 08일	이사회 승인	개정
2026년 02월 12일	이사회 승인	개정

회비 규정

2026년 02월 12일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 규약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①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회원 회비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3. 특별회비
4. 회원단체 회비

제3조(회비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의 직원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 사무처장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 라 함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4. “회원단체 회비” 라 함은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의 범위) ①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전 직원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사무처장
3. 회원단체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가입된 단체

제5조(회비납부의 의무) ① 연합회가 정한 회원, 사무처장 회비는 소속 종목단체가 일괄 또는 개인별로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부과) ① 회원, 사무처장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 “별표 제1호” 와 같다.

②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징수방법) ①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연납 또는 분기납도 가능하다.

제8조(회비의 수납) 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자지급수단(이체, 카드결제 등)을 통한 납부를 허용하며,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 ① 회계담당자는 회비 납부단체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회원 및 사무처장 납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비 미납에 대한 처분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합회 규약 제7조(권리와 의무)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1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상조 지원, 교육 및 행사 참가 등 회원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연합회 규약 제7조에 따름).

④ 회비 미납에 관한 세부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비의 관리) ① 회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의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의2(개인정보 보호) ① 회비의 부과·징수 및 상조회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는 연합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1조(회비의 운영) ① 회비의 운영은 연합회 규약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상조회 운영) ①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상조회 운영 적용 대상은 연합회 회비 납부 36개월 이상 회원(사무처장 포함)에 한하되, 회원의 결혼 및 부모상의 경우에 한해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상조비 지급 기준은 회비 규정 “별표 제2호” 와 같다.
3. 경조사 시 화환 등 현물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른다.
4. 생일축하금 지급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다.

제13조(상조비의 구분) 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 전별금
4. 생일축하금
5. 경조환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 생일축하금 및 경조 화환 제공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2년 03월 29일(제정 / 이사회)
- 2023년 02월 22일(제1차 개정 / 이사회)
- 2023년 12월 08일(제2차 개정 / 이사회)

- 2026년 02월 12일(제3차 개정 / 이사회)

【별표 제1호】

회비 부과 기준표

부과기준		회비(월)	비 고
사무처장협의회		10,000원	
회원	사무처장	25,000원	
	직원	25,000원	
회원단체		-	

【별표 제2호】

상조비 지급 기준표

구 분		경조금(원)	대상
축의금	본인결혼	300,000	회비납부 12개월 이상
	자녀결혼	3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자녀출산	2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조의금	본인	1,0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부모	300,000	회비납부 12개월 이상
	배우자 및 자녀	3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퇴직전별금	퇴직자 전별금	12개월 당 100,000	회비납부 36개월 이상
생일축하금	생일축하금	50,000	회원
경조환	결혼, 사망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화환(표준형 1점)	회원